

경기도 고시 제2026-83호

오산 가장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오산 가장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3. 20.
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 개요(변경)

가. 면적 및 관리기관(변경없음)

- 위 치 / 면적 :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72번지 일원 / 513,022.7㎡
- 관리기관 : 오산시

나. 조성목적(변경없음)

- WTO체제의 돌입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개발이 시급함
-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국내·외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산업의 다각화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
- 기존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도시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용도지역 위반업체 및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

다. 추진경위(변경)

- 2005. 04. 04. :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05-75호)
- 2005. 05. 13. : 부지조성공사 착공계 제출
- 2006. 07. 13. : 관리기본계획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05-228호)
- 2007. 07. 26. 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07-228호)
- 2008. 05. 21. :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08-142호)
- 2008. 07. 25. : 준공(부분 : 제1공구)인가 (경기도 공고 제2008-687호)
- 2008. 12. 09. :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08-507호)
- 2010. 06. 25. :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10-203호)
- 2010. 06. 25. : 준공(부분 : 제2공구)인가 (경기도 공고 제2010-735호)
- 2013. 06. 05.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13-155호)
- 2017. 07. 14.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17-5183호)
- 2017. 12. 22. :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(경기도 고시 제2017-5291호)
- 2020. 03. 25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0-5074호)
- 2020. 07. 07.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(경기도 고시 제2020-5143호)(신설)

라. 분양현황(변경)
(기정)

구 분	분양대상 (㎡)	분양현황			개발 기간	시행 기관
		계	분양	미분양		
계	339,165	339,165	337,821.8	1,343.2	2003~ 2020.12.31	오산시
산업시설용지	331,805.5	331,805.5	331,805.5	0		
지원시설용지	7,359.5	7,359.5	6,016.3	1,343.2		

경 기 도 보

제7961호

2026. 3. 20. (금)

(변경)

구 분	분양대상 (㎡)	분양현황			개발 기간	시행 기관
		계	분양	미분양		
계	339,165	339,165	339,165	-	2003~ 2020. 12. 31.	오산시
산업시설용지	331,805.5	331,805.5	331,805.5	-		
지원시설용지	7,359.5	7,359.5	7,359.5	-		

※ 변경사유 : 미분양토지가 분양완료되어 분양현황에 반영함(신설)

마. 입주현황(변경)
(기정)

구 분		입주업체수(개사), 면적(㎡)				
		계	화합물	기타기계	기타전기	기타전자
‘20년 06월 현재	업체	36	8	16	2	10
	면적	331,805.5	254,589.9	44,022.7	6,890.2	26,302.7

(변경)

구 분		입주업체수(개사), 면적(㎡)						
		계	화학,의약	화합물	기타기계	기타전기	기타전자	기계,전기
‘25년 12월 현재	업체	31	1	4	6	7	12	1
	면적	331,805.5	236,620.5	14,135.3	28,294.1	16,245.3	33,384.4	3,125.9

※ 변경사유 : 복합업종 추가 및 입주업체 변경에 따라 입주현황을 반영함(신설)

바. 입지여건(변경없음)

시 설 명	총 계 획	개발기간	시행기관
도 로 (㎡)	• 일반도로 - 대로(1개노선) : 13,510(537m) - 중로(7개노선) : 29,774.9(2,013m) - 소로(1개노선) : 2,098.8(253m) • 특수도로 - 소로(2개노선) : 348(58m) • 기타(가각, 우회전차로, 버스정차대등) - 4,204.3	2003~2020. 12. 31.	오산시
용 수 (㎡/일)	• 공업용수 : 4,324㎡/일 • 생활용수 : 275㎡/일	"	"
전 력 (천KWH/년)	• 공장용지 : 175,871 •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 : 7,124.5	"	한국전력공사
통 신 (회선)	• 공장업무용 : 207 • 지원시설용 : 46	"	한국통신공사
오·폐수처리 (㎡/일)	• 공장폐수 : 687㎡/일 • 생활오수 : 72㎡/일 • 지하수량 : 80㎡/일	-	오산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
폐기물처리 (톤/일)	• 생활폐기물 : 0.5953 • 배출시설계폐기물 : 63.63 • 지정폐기물 : 28.609	-	각 개별공장 위탁처리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(변경없음)

- 합리적인 업종배치와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
- 고부가가치 생산 기업유치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이전업체 등을 유치하여 경기남부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 발전
-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(변경없음)

1) 용도별 구역면적(변경없음)

구분	총면적(㎡)	산업시설구역(㎡)	지원시설구역(㎡)	공공시설구역(㎡)	녹지구역(㎡)
용도별	513,022.7 (100%)	331,805.5 (64.7%)	7,359.5 (1.4%)	87,238.3 (17.0%)	86,619.4 (16.9%)

※ 공공시설구역 : 공원(21,887.0㎡), 도로(49,936.0㎡), 주차장(12,838.1㎡), 배수지(2,577.2㎡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(변경)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집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」에서 정한 규정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)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신설)

나) 지원시설구역(변경)
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,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중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※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업종(변경없음) : [붙임 3]
- 주차장용지는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및 관련법에 의한 부속용도 등을 설치할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만 허용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단, 지원시설용지 375-3번지 내 설치하는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제2호 시설에 한함)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신설)

다) 공공시설구역(변경)

- 도로, 배수지 등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신설)

라) 녹지구역(변경)

-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단,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만 허용)(신설)

3)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(변경없음) : [붙임 1]

경 기 도 보

제7961호

2026. 3. 20. (금)

다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세부 배치계획(변경)

(기정)

업 종	업체수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31	331,805.5	100.0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	5	250,755.8	75.6	
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6	28,294.1	8.5	
전기장비 제조업(28)	7	16,245.3	4.9	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	12	33,384.4	10.1	
전기장비제조업(28), 금속가공제품제조업;기계 및 가구제외(25)	1	3,125.9	0.9	

(변경)

업 종	업체수		면 적(㎡)		구성비(%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합 계	31	31	331,805.5	331,805.5	100.0	100.0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	-	1	-	236,620.5	-	71.3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	5	4	250,755.8	14,135.3	75.6	4.3	
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	6	6	28,294.1	28,294.1	8.5	8.5	
전기장비 제조업(28)	7	7	16,245.3	16,245.3	4.9	4.9	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(26)	12	12	33,384.4	33,384.4	10.1	10.1	
전기장비제조업(28), 금속가공제품제조업; 기계 및 가구제외(25)	1	1	3,125.9	3,125.9	0.9	0.9	

※ 상기사항 중 입주업체 수는 입주수요와 분양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)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오산시 장기발전방향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업종
-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블록화 배치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 규정에 의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

3)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(변경) : [붙임 2]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)

1) 입주대상 업종(변경)
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; 의약품제외(20)
 -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(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에 한함)(신설)
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
 - 전기장비 제조업(28)
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
 - (삭제)
 - (삭제)
 -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제외(25)
 -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 중 태양력발전업(35114)에 한함(신설)
- ※ (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

2) 입주제한 업종(변경)

구 분	입 주 제 한 업 종
용수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업종	-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,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, 석제품, 아스팔트,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광물제품, 곡물가공품, 전분 및 당류, 사료제조업 - 도축·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,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,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, 동식물성 유지,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
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악취다량 배출업종	- 기초유·무기화합물, 무기안료·염료·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, 비료 및 질소화합물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, 살충제 및 기타농약, 도료·인쇄잉크 및 유사제품, 화학섬유 제조업
기타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	-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,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

※ 중분류 21업종의 경우, 입주가능업종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,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(신설)

-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20111)
-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20112)(명칭변경)
-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(20112)
-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(20499)
-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(20129)
-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(20131)
- 염료, 조제 무기 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(20132)
- 질소화합물,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(20311)
-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(20312)
-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(20313)
- 합성고무 제조업(20201)
-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(20202)
-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(20203)
- 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20321)
- 생물 살균·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(20322)
-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(20411)
-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(20412)(명칭변경)
-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(20413)(명칭변경)
-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(20491)
-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(20492)
-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(20493)
-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(20494)(명칭변경)
- 합성섬유 제조업(20501)
- 재생섬유 제조업(20502)
- (삭제)
- (삭제)
-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(25200)
-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(25911)
-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(25912)
-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(25913)
- 금속 열처리업(25921)
- 도금업(25922)
-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
- 일차전지 제조업(28201)
-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(28301)
-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28302)(명칭변경)

3) 입주자격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(변경없음)
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단,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·증설 및 이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)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 자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

나) 지원시설구역(변경)

-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중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(신설)

4) 입주우선 순위(변경없음)

가) 산업시설구역

- 1순위 : 오산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
- 2순위 : 수도권(과밀억제지역, 성장관리지역, 자연보전지역)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를 포함한 그 업체의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(단,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7조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.)
- 3순위 : 수도권(과밀억제지역, 성장관리지역, 자연보전지역)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중 「산집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수출위주업체
- 4순위 :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

나) 지원시설구역

- 1순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[별표1] 제11호 (노유자시설)
- 2순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[별표1] 제3호 (제1종 근린생활시설) 바목 및 제14호 (업무시설) 가목 (공공업무시설)
나목(일반업무시설) 중 오피스텔(단, 지원시설용지 375-3번지내 설치하는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제2호 시설에 한함)
- 3순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[별표1]에 의한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4순위 :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시설
- ※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업종(변경없음) : [붙임 3]
- ※ 업무시설 세부용도(변경없음) : [붙임 4]

5) 입주절차(변경없음)

- 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「산집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

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)

1) 분양용지 관리(변경없음)
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「산집법」, 산업단지 관리지침, 오산가장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
- 관리권자·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(건축물이 있는 경우, 없는 경우)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,650㎡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.
-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(도로·용수·상하수도·전기·가스·고속통신망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. 다만,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「산집법」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.
-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입주계약 만료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함.
-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.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.
-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.
(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업시설용지는 제외가능)

2) 환경관리(변경없음)
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·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,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산업단지의 오·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배출토록 하고 배출수질은 오산 하수종말 처리장의 유입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
-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, 운동 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

3) 안전관리(변경없음)

-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, 소방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,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
- 「산집법」 제45조 및 동법 「산집법」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
-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
4) 기반시설지원(변경없음)

-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

5)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(신설)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업체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공정, 도시계획, 구조고도화,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
-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,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 계약 체결 시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유무를 통지하고 승계 등의 업무 지원할 수 있다.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
1) 공장설립 지원

-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·허가 최대한 지원
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2) 생산활동 지원

-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
- 산업기반자금, 산업기술개발자금 등의 융자자금 지원 및 알선

3) 근로자복지사업 지원

-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
- 공원 내 운동시설을 이용한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하고 공원을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

4) 지원시설 설치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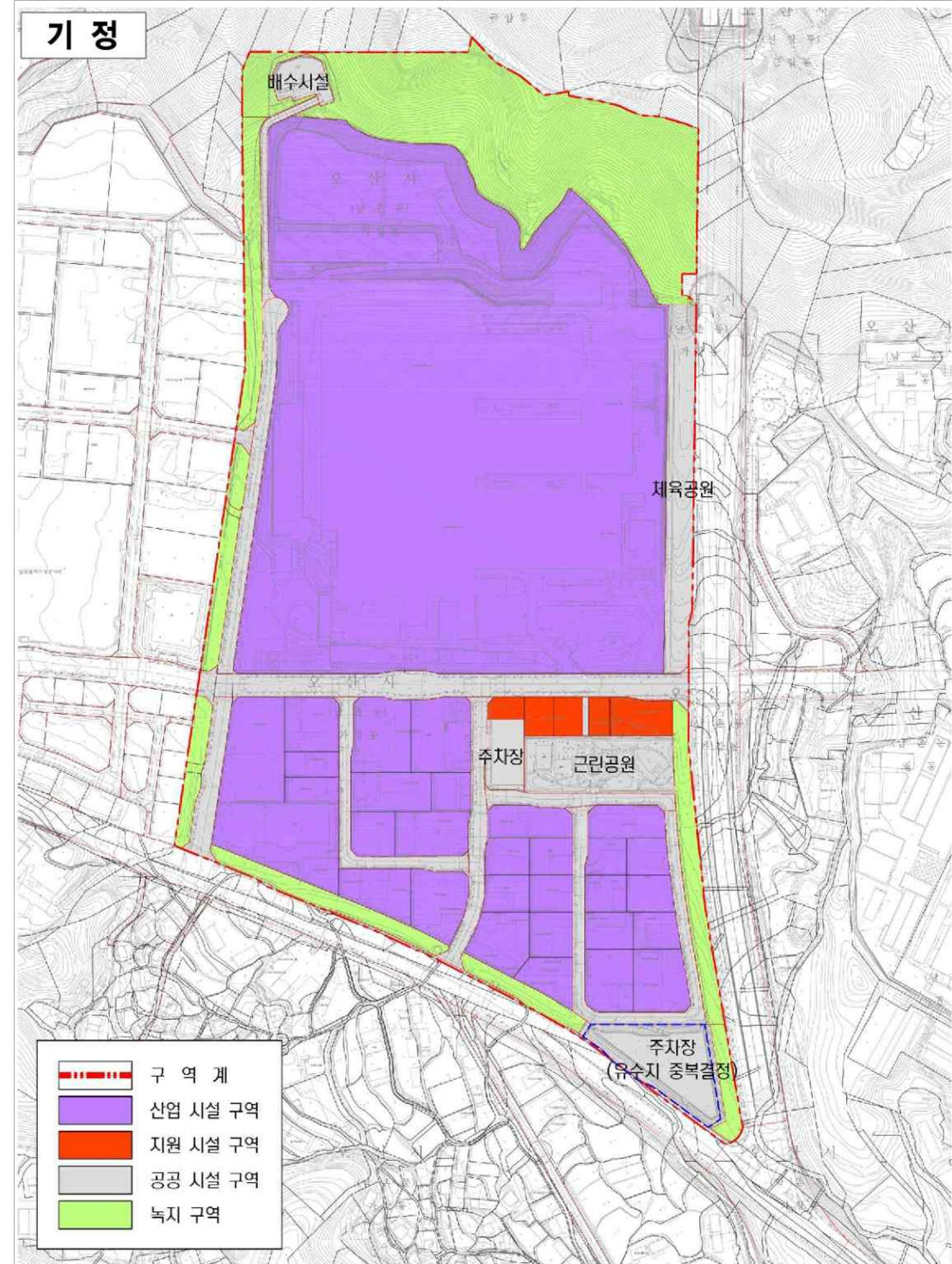
- 기타 공용의 청사,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 관련시설, 근로복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

사. 기타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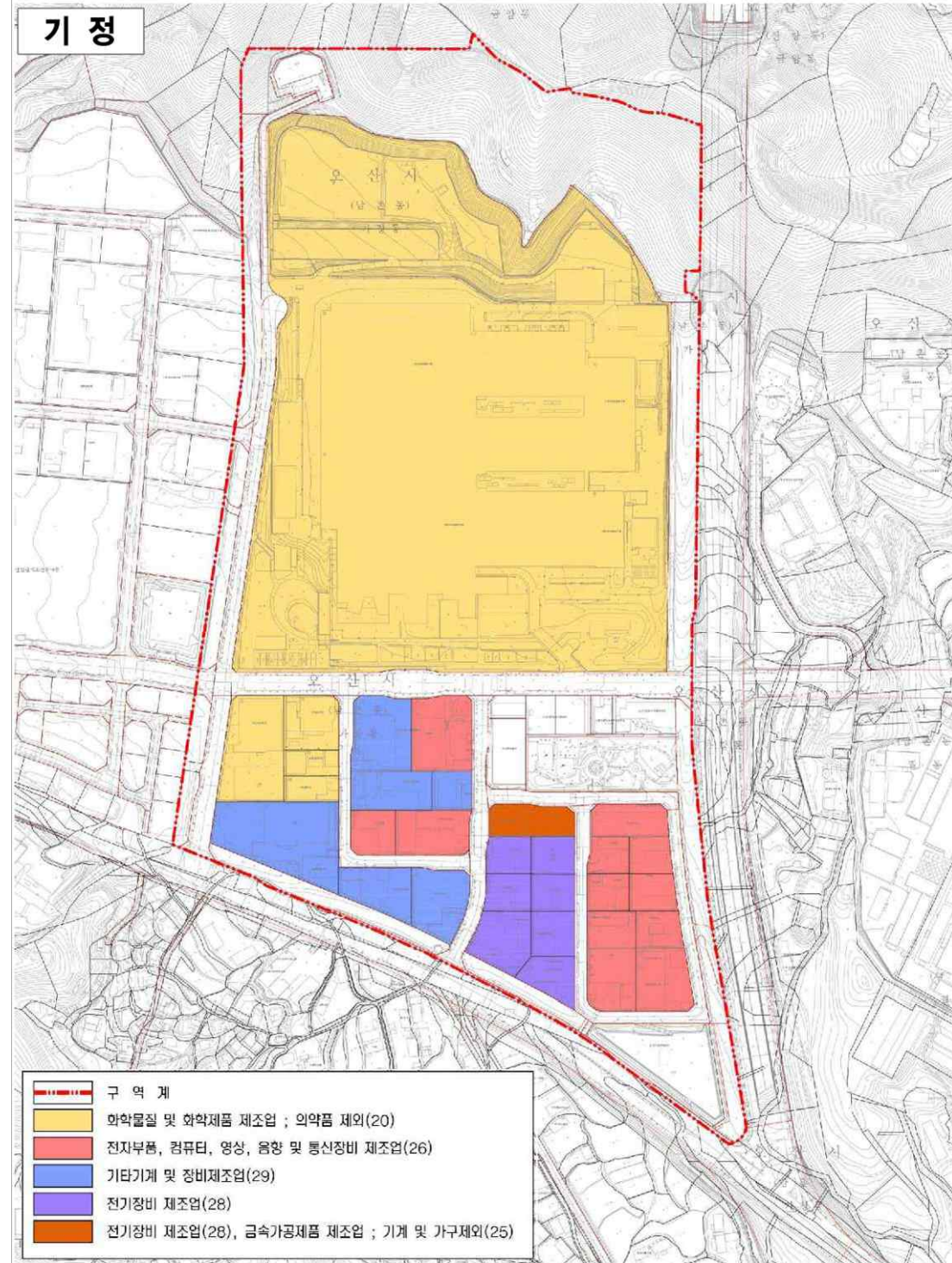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- 인력수급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- 분양용지 불법전매·장기유휴화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철저

- 붙임 1.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(변경없음) 1부.
 2.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(변경) 1부.
 3. 제1종-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업종(변경없음) 1부.
 4. 업무시설 세부업종(변경없음)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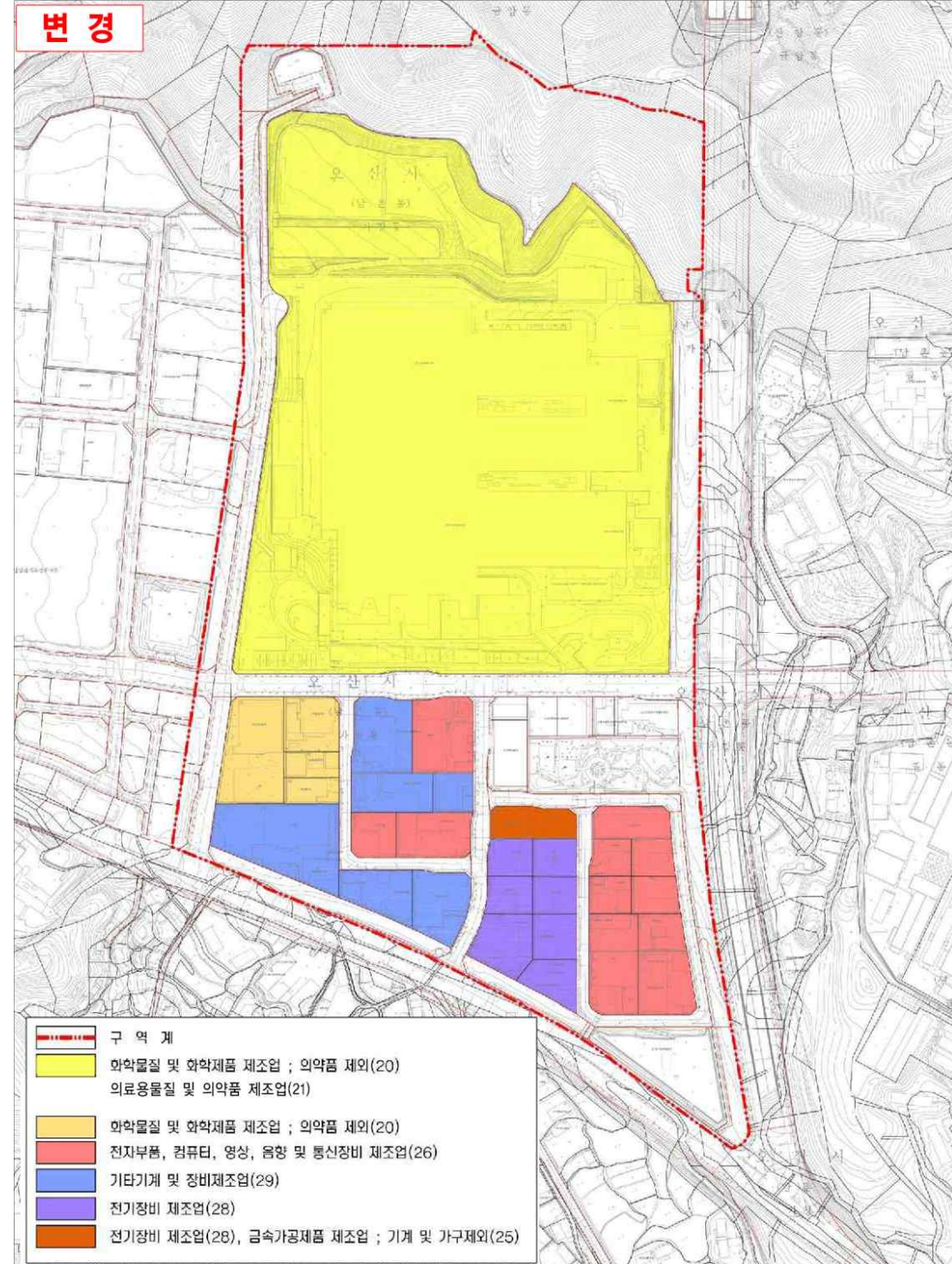
[붙임 1]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(변경없음)



[붙임 2]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(기정)



[붙임 2]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(변경)



[붙임 3]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업종(변경없음)

구 분	세부업종
근린 생활 시설	□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. 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. 이하 같다)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(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.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,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·수선하는 시설(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) 라. 의원, 치과 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·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. 탁구장,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.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.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), 정수장,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·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·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
	□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.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.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.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 바. 사진관, 표구점 사.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(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. 일반음식점 차.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. 학원(자동차학원·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), 교습소(자동차교습·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업훈련소(운전·장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. 독서실, 기원 파.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(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너.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,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러. 노래연습장 ※ 제외시설 :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, 사당,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고시원, 다중생활시설

[붙임 4] 업무시설 세부업종 (변경없음)

구 분	세부업종
업무시설	□ 업무시설 가. 공공업무시설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. 일반업무시설: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. 1) 금융업소, 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) 오피스텔(업무를 주로 하며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) ※ 단, 오피스텔은 지원시설용지 375-3번지내 설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시설에 한함